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0
----------	-------

제출년월일 : 2018.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 정비
- 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내용 반영 정비(안 제2조, 제3조)
- 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시행일(2013. 5. 30)로부터 5년 -> 2023년 5월 30일까지
- 다. 기금 운용 전산화(통합자금관리시스템)로 사문화된 제12조③항(기금 관리 대장, 기금 출납부 비치 및 기재) 및 관련 별지서식 삭제
-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2. 22. ~ 2018. 3. 14. (의견제출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 3)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 4) 재정계획 심사 결과 : 적정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18. 3. 29.)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7)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를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3조제1호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이차보전”을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2호의2) 중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를 “사업자금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제8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제3조제7호(중전의 제4호)가목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같은 목 및

나목 중 “대여받은”을 각각 “대여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제6조제5호 중 “제3조제6호”를 “제3조제11호”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이차보전)”을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차보전”을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차보전을”을 각각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u>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u> ----- <u>- 자활기금의 관리·운용-----</u> ----- -----</p>
<p>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제2조(기금의 조성)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u>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u></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u>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u></p>	<p>제3조(기금의 용도) ----- ----- -----</p> <p>1. -----<u>금융회사등-----</u> ----- <u>금리차이에</u></p>

전

2. (생략)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용자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채용하는 기업에 사업자금 대여

<신설>

3. (생략)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신설>

대한 보전

2. (현행과 같음)

4. -----
----- 사업자금 대여

<삭제>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6. (현행 제3호와 같음)

7. -----

가. ----- 금융회사등 -----
----- 대여받는 -----

나. ----- 대여받는 -----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생략)

6.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8. (현행 제5호와 같음)

11. (현행 제6호와 같음)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
상위계층

2. ~ 4. (생략)

5. 제3조제6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단체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
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
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
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
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

-----.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 4. (현행과 같음)

5. 제3조제11호-----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
항-----

1. ~ 3. (현행과 같음)

9조(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
금융회사등-----

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② (생략)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

----- 범위 -----

② -----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

③ -----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
-----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
----- 금융회사등 -----

② ----- 필요 -----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과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박용주
연 락 처	02-3153-6482